

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, 인허가 과정,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**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**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: 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% 범위

구분		84A	84B	84C	84D
기관추천	국가유공자 등	11	5	4	3
	장기복무 제대군인	5	3	2	1
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	7	3	2	2
	중소기업 근로자	8	4	3	2
	장애인	경기도	8	3	2
		서울특별시	3	1	1
		인천광역시	3	1	1

■ 대상자
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**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**
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** (단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청약통장 불필요)

■ 추천기관

구분	관련법규 및 기관	해당 기관	청약통장
국가유공자 등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	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	-
장기복무 제대군인	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		●
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	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		●
중소기업 근로자	「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」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	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	●
장애인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	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	-
		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	
		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	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. 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)
-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,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